

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. 12. 17 선고 2024가단2106 판결 [건물명도등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2024. 12. 3.

판 결 선 고 2024. 12. 17.

주 문

1.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 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11. 2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피고 C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,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가. 피고 B에 대하여 :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나. 피고 C에 대하여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장진영

별지